

『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
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2012년 9월 27일 구미시 산동면 국가산업 4단지내 주식회사 휴브글로벌에서 발생한 불산누출로 인해
- 주민 및 기업체가 입은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3. 주요내용

- 보상금등의 지급대상(안 제3조)
-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(안 제4조, 안 제5조)
- 보상금 수령권자, 결정, 지급청구, 공고(안 제6조 ~ 안 11조)
- 보상금의 구상(안 제12조)
- 보상금 시행일, 경과조치(안 부칙)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 및 제61조, 「민법」 제469조 및 제480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2012년 9월 27일 구미시 산동면 국가산업 4단지내 주식회사 휴브글로벌에서 발생한 불산누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체에

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피해주민을 위로하고,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3조는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,
- 안 제4조 ~ 5조는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내용이며,
- 안 제6조 ~ 12조에는 보상금 수령권자, 결정, 지급청구, 공고, 보상금의 구상에 관한 사항이며
- 안 부칙에는 보상금 시행일,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임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선보상 후구상 원칙에 따라 구미시가 사고 가해자를 대신하여 신속하게 보상해 줌으로써 지역사회 안정과 피해자의 생계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그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.
- 본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,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및 제61조, 민법 제469조와 제480조에 근거한 것으로
- 보상금의 지급은 법령에서 정한 일체의 법적보상금과 특별보상금을 지급하고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또한, 관련 부서에서 배부한 설명자료 중 입법 예고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제출한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의견을 참조하여 검토 바람.